

자료실

독일연방자연보호법

Das Bundesnaturschutzgesetz 2009



독일연방자연보호법

1. 구조와 내용 요약

총 73조항이며 내용에 따라 10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주: 붉은 색으로 표시된 조항은 아래 전문을 번역함)

제1장	일반 항목	1~7조
1조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목표	
2조	목표달성의 과제	
3조	담당관청, 업무, 관할, 계약관련, 기관간의 협업	
4조	공공공간의 기능 보존	
5조	농업, 임업, 수산업	
6조	자연과 경관의 관찰에 대하여	
7조	개념정리	
제2장	환경생태계획	8~12조
8조	개요	
9조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와 내용, 조례 발령 권한	
10조	환경생태프로그램과 환경생태기본계획도	
11조	환경생태계획도와 환경생태실시계획	
12조	연방주 간의 협업	
제3장	자연과 경관의 보호 (“침해조항”)	13조~19조
13조	개요	
14조	자연과 경관 침해	
15조	원인자책임, 자연침해 불가항목, 조례 발령 권한	
16조	보상방안의 사전 준비	
17조	절차; 조례 발령 권한	
18조	건설법과의 관계	
19조	특수한 생물종과 자연생활권의 훼손	
제4장	특수한 자연과 경관의 보호	
1부	비오톱 연계	20~30조
20조	개요	
21조	비오톱시스템과 상호 연계	
22조	자연과 경관의 특수보호구간에 대한 설명	
23조	자연보호구역	
24조	자연공원, 국립천연기념물	
25조	생물권보전지역	
26조	경관보호구역	
27조	자연공원	
28조	자연기념물	
29조	경관요소보호지구	
30조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비오톱 ¹⁾	
2부	“Natura 2000” 네트워크	31~36조

31조	“Natura 2000” 네트워크의 구조와 보호	
32조	보호구역	
33조	일반보호규정	
34조	허용된 프로젝트와 금지 프로젝트, 예외 규정	
35조	유전자 변형 생물체	
36조	도면	
제5장	야생에서 생존하는 동물과 식물, 서식처와 비오톱 보호	
1부	개요	37~38조
37조	생물종보호의 과제	
38조	야생에서 생존하는 동물과 식물, 서식처와 비오톱 보호를 위한 일반 규정	
2부	일반 생물종보호	39~43조
39조	야생에서 생존하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일반적 보호규정; 조례 발령 권한	
40조	비자생종, 외래종, 침입종	
41조	고압전선과 조류보호	
42조	동물원	
43조	동물사육장	
3부	특수한 생물종 보호	44~47조
44조	특수보호 대상이 되는 동식물 종에 대한 규정	
45조	예외규정; 조례 발령 권한	
46조	허가증의 의무 ²⁾	
47조	소환	
4부	담당관청, 동물과 식물의 반입	48~51조
48조	담당관청	
49조	세관의 역할; 조례 발령 권한	
50조	동식물 반출입시 등록의 의무	
51조	세관을 통한 압수, 소환, 유치에 관한 규정	
5부	정보 제공과 가택 방문: 수수료	52~53조
52조	정보 제공과 가택 방문 ³⁾	
53조	수수료, 조례 발령 권한	
6부	권한	54~55조
54조	조례 발령 권한	
55조	국내 및 국제법 제정과 집행	
제6장	해양자연보호	56~58조
56조	적용 대상과 범위	
57조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과 대륙붕의 해양보호구역, 조례 발령 권한	
58조	담당관청; 수수료; 조례 발령권	
제7장	자연과 경관 내에서의 휴양	59~62조
59조	소풍객	
60조	책임소재 ⁴⁾	
61조	호소와 호소구역의 건설금지	
62조	휴양 공간 제공의 의무	
제8장	공인된 자연보호협회의 역할	63~64조
63조	협조의 의무	
64조	소송	

제9장	사유재산과 자연보호	65~68조
65조	관용의 의무	
66조	자연보호를 위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관청은 토지 선구매의 권리를 가짐.	
67조	예외 조항	
68조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보상	
제10장	벌금과 처벌	69~73조
69조	벌금규정	
70조	행정관청	
71조	처벌규정	
72조	소환 및 압수	
73조	세관의 권한	
제 11장		74조
74조	법령 발령시까지 과도기간에 대한 규정	

-
- 1) 역주: 2009년 개정안에서 대폭 강화되고 구체화됨.
 - 2) 보호종의 동식물을 개인이 소유할 경우 관청에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3) 자연보호 관청 등이 필요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게 (동식물, 토지 등) 에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와 개인 소유지 방문을 허락해야 하는 의무 등에 대한 조항
 - 4) 자연경관 내에서 소풍이나 등산 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누구도 (관청)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

2. 연방자연보호법 중 주요 조항 전문 번역

제 1장	개요	
1조	자연보호법 제 1조에 의해 자연과 환경생태의 보존, 보호 및 재생과 관리는 사회가 스스로에게 내린 일종의 자기 ‘용역’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조항에서 환경생태계획과 관련된 모든 기본원칙을 끄집어 낼 수 있다. • 리스크 제어의 원칙 (예방 원칙) • 종의 다양성과 경관의 다채로움 보존의 원칙 • 참여의 원칙 (“자연과 환경생태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다.”)	
5조	농업, 임업, 수산업	
	(1)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친환경적인 농업, 임업, 수산업의 역할을 감안해야 하며 휴양공간으로서의 자연경관을 유지보존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농업에 관해서 연방토지보호법 17조 2항에서 농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라야 하며 특히 아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랜 체험에서 유추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토양의 생산성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는 농법을 적용한다. 2. 농경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특성, 즉 토질, 수질, 동식물은 친환경적인 범위를 넘어 소득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필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비오톱 연계구조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과 자연의 요소는 보존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확장시켜야 한다. 4. 축산업과 식물경작 사이의 비율을 균형있게 유지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회피하여야 한다. 5. 토양유실의 위험이 있는 곳, 범람지, 지하수위가 높은 곳, 늪지 등은 땅을 갈지 못한다. 6. 비료와 농약의 투입은 각 해당 법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지켜야 한다. (3) 삼림의 임업이용의 경우 삼림의 구조를 자연에 가깝게 전환하여 유지해야 하며 대량 벌목은 금한다. 지역생태계에 부합되는 수종의 비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4) 하천과 호소에서 어업을 행할 때 하천변과 호소변을 포함한 생태계, 자생하는 동식물의 생활공간, 서식처 등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 생태계에 맞지 않는 어류의 도입은 금한다. 호소를 양어장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자생하는 동물과 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포획의 한계를 지켜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2장	환경생태계획	8~12조
8조	개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는 환경생태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사전 준비의 개념으로 범지역적, 혹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9조	환경생태계획의 과제와 내용, 조례 발령 권한	
	(1) 환경생태계획의 과제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를 각 계획단계와 구역별로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의하고 계획과 행정절차에 부합되는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계획범위내의 자연과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환경생태계획에서는 자연과 경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전략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고 각 방안과 전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표현과 근거 제시 ⁶⁾ 는 본 법의 10조와 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생태프로그램, 환경생태기본계획, 환경생태계획 및 환경생태실시계획을 통해서 진행된다.	
	(3)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자연과 경관의 기존 현황과 기대되는 상태 2.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3. 설정한 목표와 현황을 대비시키고 여기서 유추되는 갈등요소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건과 실천 전략, 구체적으로는, (a) 환경영향의 방지, 감소 내지는 제거를 위해 (b) 본법 제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자연과 경관 및 비오톱, 야생에서 서식하는 생물군집, 동식물 서식처의 보호를 위해 (c) 자연침해에 대한 보상책을 실현하거나 자연과 경관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에 대해 (d) 비오톱 네트워크 및 Natura 2000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e) 토양, 물, 공기 및 기후를 보호, 재생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 (f)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g) 거주지 및 비거주지의 외부공간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생태계획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공간계획이나 건설계획에서 넘겨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연방환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안전부는 조례를 통해 도면작성의 방법, 표현방식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4) 환경생태계획은 위의 4. (a)~(g)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수정될 수 있다. 특히 계획대상지 내의 자연과 경관의 현황이 변하거나 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정된 공간이나 테마에 대해서는 수정/개정안을 부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5) 모든 계획이나 행정절차에는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 환경영향에 대한 판단과 본법의 34조⁷⁾에 의거하여 적합성을 판단할 때 참조하여야 한다. 또한 수자원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 45h조와 82조⁸⁾에 의거하여 실천방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도 감안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생태계획의 내용과 아무 저촉이 없을 시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0조	환경생태프로그램과 환경생태기본계획	
	(1) 주전체의 환경과 자연경관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생태프로그램(LaPro)에서 수립하며, 현이나 군단위의 경우 환경생태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립한다. (2) 주단위로 환경생태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역주: 수립의 의무는 없음.) 군이나 현단위로 수립하는 환경생태기본계획(LaRP)은 환경생태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포괄적이지 않을 때 수립해야 한다. (3)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과 설정한 실천전략은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저촉되는 한 감안해야 한다. 이는 연방공간계획법 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4) 환경생태프로그램, 환경생태기본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담당관청의 지정 및 공간계획과의 연동성 등은 각 주의 법에 따른다.	
11조	환경생태계획과 환경생태실시계획	
	(1) 게마인데⁹⁾ 단위로는 환경생태계획(LP)을 수립하며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생태실시계획(GOP)을 수립하여 조정한다. 이 때 환경생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 공간계획에서 수립한 목표와 기본 원칙들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법의 9조 3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감안하되, 각 주에서 환경생태계획과 환경생태실시계획에 대해 별도로 제정한 법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2) 환경생태계획은 본법 9조 3항 1단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이나 실천전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계획대상지의 자연과 경관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립해야 한다. 환경생태실시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¹⁰⁾ (3) 환경생태계획에서 설정된 요구사항이나 실천전략들은 건설법전 1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간계획이나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야 한다.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이 감안되었을 때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며 건설법전 5조와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시 혹은 확정¹¹⁾의 두 유형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건설계획에 수용되어야 한다. (4) 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 주는 환경생태프로그램 혹은 환경생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환경생태계획을 대신한다.¹²⁾ (5) 환경생태계획과 환경생태실시계획의 수립절차와 담당관청의 지정 등의 사항은 각 주의 법에 따른다.	
12조	연방주 간의 협업	
	본법 10조와 11조에 의거하여 환경생태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이웃 주와의 경계에 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 협업 하에 절차를 진행한다.	
제3장	자연과 경관의 보호 (“침해조항”)	13조~19조
13조	개요	
	환경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은 원인자가 미리 피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상쇄, 대체방안을 실현하되 상쇄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을 지불한다.	4대 원칙 1. 미연방지 2. 상쇄 3. 대체 4. 보상

14조	자연과 경관 침해	
	(1) 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연과 경관의 침해란 토양이용의 유형이나 토양구조가 변하는 경우, 혹은 토양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수면의 변화를 초래하여 공간의 생태기능이 감소되거나 경관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의 토지이용의 경우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를 존중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연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이 본법 5조 2~4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연방토양보호법 17조 2항을 준수하는 경우, 또한 농업, 임업, 수산업의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모범적인 실무원칙을 준수하는 경우 자연보호법의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농업, 임업과 어업/수산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중단 혹은 축소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자연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1. 관청과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중단했다가 계약이 만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 2. 환경침해에 대한 대체방안¹³⁾을 미리 수행하기 위해 중단했으나 대체방안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15조	원인자 ¹⁴⁾ 의무조항, 자연침해 불가항목, 조례 발령 권한	
	(1)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훼손을 초래하는 원인자는 이를 미연에 방지(회피)할 의무가 있다. 환경피해 없이도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대안을 택해야 한다. 미연의 방지가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사전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원인자는 환경영향이나 자연침해를 우선적으로 상쇄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상쇄방안은 영향 받거나 침해된 자연과 경관이 같은 방법으로 복구되거나 새로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순환의 기능에 훼손된 것과 같은 유형으로 복원되었거나 훼손된 경관의 아름다움이 똑같이 재생되거나 같은 유형으로 새로 조성되었을 경우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훼손된 자연순환의 기능과 경관의 아름다움과 같은 정도로 복원하였을 경우 훼손정도가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쇄 및 대체방안은 본법 10조와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여러 위계를 통해 확정한다. (3) 농경지나 임업지에 위의 상쇄와 대체방안을 실시할 경우 농업구조적인 측면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특히 농업을 위해 적절한 토지는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쇄와 대체방안 실시를 위해 요구해야 한다. 상쇄와 대체방안을 설정함에 있어, 토양이 포장된 곳에 포장을 철거하는 방법과 야생동식물의 생활공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과,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적절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실시된 상쇄와 대체방안은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하며 법적으로 구속해 두어야 한다.	훼손사업: 환경과 자연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예상되는 사업

	(5) 미연방지, 적절한 상쇄와 대체방안을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과 자연에 대한 침해/훼손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 또한 대상지의 자연보호와 경관관리가 다른 모든 이익관계에 우선하는 경우에도 훼손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 (6) 위의 5번에서 설명한 훼손사업, 즉 미연방지, 상쇄, 대체방안이 불가한 사업이 부득이하게 승인되는 경우 원인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상쇄 내지는 대체방안이 실시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 전체와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 및 계획용역비, 기타 시설운영 및 관리비를 모두 합산하여 책정한다. 이 금액의 책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환경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원인이자가 사업을 통해 취득할 이익금을 함께 감안하여 책정한다. 보상금은 개인 사업일 경우 해당관청에서 사업승인서류를 발급할 때 책정하며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정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사업개시 이전에 지불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불기한을 부득이하게 연기해야 하는 경우 보증이 있어야 한다. 보상금은 가능한 한 침해와 훼손이 발생한 곳에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책을 실시하는 공간은 다른 규정에 의해 이미 다른 사업이나 보상책이 계획되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7) 연방환경부는 연방농림부 및 연방 교통건설부와 협의 하에 그리고 연방상원의 인가를 받아 보상방안을 규정할 수 있다. 특히, 1. 상쇄, 대체 및 보상방안의 유형, 내용 및 범위를 제시하되, 토양포장 제거, 야생동식물의 생활공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관리와 운영방안 및 이를 위한 질적 기준을 규정한다. 2. 보상금의 규모와 지불방법을 규정한다. 연방환경부가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 보상에 관한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주에서 제정한 법령을 따른다.¹⁵⁾	
16조	보상방안의 비촉 ¹⁶⁾	
	(1) 환경과 자연에 대한 훼손이 발생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에 실시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방안들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쇄 및 대체방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의 15조 (2)항의 조건이 만족될 때 2. 법적 구속 없이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때 3. 정부지원금 없이 실시했을 때 4. 본법의 10조, 11조에서 말하는 환경생태계획의 모든 위계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 5. 방안이 실시되기 이전의 상태가 조사되고 이를 문서로 남겼을 때. (2) 상쇄 및 대체방안을 비촉함에 있어 생태계좌, 공간풀,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사전에 실시한 상쇄 및 대체방안을 생태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승인절차와 관리 및 조정 및 제 삼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각 주에서 규정한다.	생태계좌, 공간풀 등 보상 방안 비촉의 디테일한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별도 첨부
17조	절차: 조례 발령 권한	

	(1) 다른 법에 의거하여 승인되는 훼손사업이나 관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 혹은 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훼손사업의 경우 해당 관청은 본법 15조의 규정을 실행함에 있어 연방법 혹은 주법에 의거 기관참여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담당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담당하는 관청/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훼손사업이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담당 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방의 해당 부서가 해당 주의 최상위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참여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들을 참여시킨다. (3) 관에서 실시하는 훼손사업이 아니지만 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본법 15조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승인해야 한다.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부서는 15조의 규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결정을 내리고 합당한 방안을 설정한다. (4) 환경과 자연침해의 원인자는 위의 15조에 의거한 방안을 책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침해 장소, 유형 및 규모와 방법 2. 미연방지, 상쇄 및 대체 방안과 이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에 대한 정보. 해당 관청은 환경영향과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전문가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될 경우, 위의 1번 항목에서 지시한 정보를 전문계획 범주 내에서 제시하거나 경관관리동반계획¹⁷⁾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경관관리동반계획에는 본법 34조 (5)항에서 말하는 “Natura 2000”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에 대한 서술과 44조 (5)항에서 말하는 사전 대체방안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경관관리동반계획은 전문계획의 일부이다. (5) 담당관청은 15조에서 말하고 있는 방안들이 실시됨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절차는 민법 232조와 240조¹⁸⁾에 의거한다. (6) 상쇄 및 대체방안과 이에 소요되는 공간들은 목록을 만들어 표시한다. (1)항과 (3)항에서 말하고 있는 해당관청은 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각 담당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1)항과 (3)항의 해당관청은 미연방지책이나 상쇄 및 대체방안들과 이에 따른 운영관리방안이 실제로 구현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한다. 이를 위해 원인자로부터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8) 승인이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훼손사업은 해당관청이 정지시킨다. 다른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본법 15조에 의거하여 원래 상태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19조 (4)항의 항목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9) 훼손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일 년 이상 중단되는 경우 담당 관청에 이	상쇄, 대체방안은 사업수행자가 직접 개발하여 제시해야 함. 이 때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환경생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	---	---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이 일 년 이상 중단되어 경우 담당 관청은 사업자에게 상쇄 혹은 대체방안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훼손사업의 완료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 실시된 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 훼손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본법 15조 (1)~(5)항에 의해 방안을 설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11) (1)~(10)항의 규정 및 보상책 목록에 대한 사항들은 각 주정부에서 조례를 발령하여 구체화한다. 주정부에서는 위임법을 제정하여 주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18조	건설법전과의 관계	
	(1) 건설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 보완 내지는 무효화하는 경우 혹은 건설법전 34조 (4)항 3번¹⁹⁾에 의거하여 수립한 조례에 의해 자연과 경관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미연방지, 상쇄 및 대체 방안은 건설법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다. (역주: 건설법전 1a조, “환경보호에 관한 추가규정”에서 침해 및 훼손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설법전에 의거하여 수립된 건설계획들에 대한 계획확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법 14조에서 17조까지 적용하지 않는다.²⁰⁾ (3) 건설법전 35조 (1)항 4번²¹⁾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건축물들을 설립할 때에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관점에서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업이나 계획확정절차를 거치는 계획과 건설법전 34조 (4)항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보호 담당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4) 건설법전 34조에 의거한 건설사업에 대하여 자연보호 담당관청과의 협의 절차를 밟는 중 아래 19조 (1)항에서 말하는 훼손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별도로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관청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담당관청과의 협의 하에 본법 15조에 의거, 미연방지, 상쇄 및 대체방안 구현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19조 (1)항의 2번 문장이 유효하다.	환경생태계획과 공간계획의 연동 근거. 건설계획 경우 환경생태계획이 아닌 건설계획, 즉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에서 직접 조정한다. 이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통해 실제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9조	특수한 생물종과 자연생활권의 훼손	
	(역주: 이 조항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지정하고 보호조류와 FFH-서식공간에 대한 훼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훼손의 정의: 생물종과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에 대한 훼손이란 그로 인해 생물종과 그들의 생활공간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다만 본법 34조, 35조 및 45조 (7)항 이나 67조 (2)항에 의거하고, 건설법전 30조와 33조에 의거하여 평가 절차를 치르고 미연방지, 상쇄, 대체방안을 수립한 경우 훼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위에서 말하는 생물종은,	

	1. 유럽연합 조류지침서 아티클 4, 2항 혹은 별첨에 명시되어 있는 조류 2. 유럽연합의 FFH-Directive (동물과 식물의 서식처 지침)의 별첨에 있는 목록이 이에 해당한다. (3)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이란 1. 위의 유럽연합 조류지침서 아티클 4, 2항 혹은 별첨에 명시되어 있는 조류들의 서식공간들과 유럽연합의 FFH-Directive에 명시되어 있는 서식공간의 유형들이며 또한 2. 각 지역 환경에 맞는 동식물의 서식 공간 3. 유럽연합의 FFH-Directive에서 말하는 서식공간 중 특히 부화지와 수면지가 이에 속한다.	
20조	일반 수칙	
	(1) 각 주의 총면적의 최소한 십퍼센트의 비오톱연계망을 조성해야 한다. (2) 자연과 경관은 부분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데, 1. 본법 23조에 의거하여 자연보호구역으로 2. 본법 24조에 의거하여 국립공원이나 국립 자연기념물, 3. 생활권보전지역 4. 본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경관보호구역으로 5. 자연공원, 6. 자연문화재, 7. 보호된 경관요소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보호한다. 8. (3) 위의 보호된 자연과 경관들은 비오톱연계망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30조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비오톱	
	(1) 자연과 경관의 요소 중에서 특별하거나 중요한 비오톱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2) 아래에 열거하는 비오톱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1. 자연적이거나 자연의 모습에 가까운 호소와 하천, 그리고 호소변과 하천변의 자연에 가까운 식물계. 모래톱, 절강, 범람지. 2. 늪지, 습지, 갈대밭, 기타 수생식물군락, 습초지, 샘, 염암. 3. 자연형성된 모래언덕, 자연적으로 형성된 돌무더기, 점토층, 관목덤불, 건조초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자라난 식물군락, 삼림, 건조 온난 기후에 형성된 덩굴 4. 습지림, 저지대림, 계곡림, 알프스 하부의 낙엽송림. 5. 기암괴석, 알프스 잔디, 늘 눈이 쌓여있는 계곡 등 6. 절벽, 해안절벽, 해안모래언덕, 모래톱연못, 발트해 연안의 하천 (빙하기에 형성된), 연안습지, 염생초지, 염색식물 등 해안에 형성되는 다양한 특이 비오톱 각 주에서 선정한 비오톱 역시 법적 보호대상이다. (3) 특별허가를 받고 훼손치만큼 대체하는 경우 (2)항의 금지항목에서 제외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위의 비오톱이 훼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마인데에서는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구단위계획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예외조항이 결정된 경우 향후 7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서 실시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4조	허용된 프로젝트와 금지 프로젝트, 예외 규정 (1) 모든 프로젝트는 승인 또는 집행 이전에 Natura 2000 지역의 보호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Natura 2000 지역이 본법 20조 (2)항에서 말하는 보호지역내에 속하는 경우 보호목표와 그에 따른 조례와 규정 등에서 Natura 2000을 포함한 보호목표가 충분히 감안되어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을 평가받는다. 사업수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 평가의 결과 환경영향이 지대하다고 판가름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1.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2. 프로젝트의 목표와 부합될 수 있는 공간적 대안과 훼손을 감소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 (4) 프로젝트 대상지의 자연적인 생활공간이 파괴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안보와 방어의 목적이나 아니면 환경을 위해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 (3)항의 1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기 위해 연방환경부의 전문가회의의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5) 그럼에도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경우 Natura 2000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연구하여 제시해야 한다. 담당 관청은 연방환경부의 전문가회의에 그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6) (1)항에 의거한 프로젝트 중, 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어느 관청의 결정이나 통보도 필요치 않은 성격의 것이라도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관청에게만은 별도로 통보해야 한다.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관청은 (1)~(5)항 까지의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시행기간을 제약할 수 있다. 통보 후 한달 내에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반대로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 담당 관청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2)항에 의거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3)항과 (5)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를 거절할 수 있다. 각 주에서 발령한 금지 및 예외 조항이 본법의 것보다 미약한 경우는 본법의 조항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7) 본법 20조 (2)항의 보호구역들과 3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비오톱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한 보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위의 (1)항에서 (6)항까지를 적용시킨다. 다만 연방환경부의 전문가 감정서에 관한 항목은 언제나 유효하다.	

35조	유전자 변형 생물체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허가 없이 세상에 풀어놓거나 Natura 2000 지역 내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의 이용을 위해 허가된 상품 중이라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 위의 34조 (1)항과 (2)항이 적용된다.	

© 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 2014

- 5) 비료투입에 관한 법령, 농약투입에 관한 법령이 따로 존재함.
- 6) <표현과 근거제시Darstellung und Begründung>는 <자연과 경관>처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개념이다. ‘표현’은 도면을 말하며, ‘근거 제시’는 보고서를 일컫는 것으로 보면 된다.
- 7) 허용된 프로젝트와 금지 프로젝트
- 8) 해양과 하천 및 호소 보호에 관련한 방침을 수립할 때 각 해당 지역의 환경생태계획을 감안해야 함.
- 9) 독일의 게마인데(Gemeinde)는 그 특성상 한국의 행정단위와 일치하는 것이 없으므로 번역을 피하고 게마인데라는 독일어를 그대로 썼다. 게마인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독일의 공간계획> pp 19~20 참조
- 10) 환경생태실시계획 (GOP)는 극히 적은 규모의 공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사전에 미리 수립하기 보다는 건설계획이 수립될 때 이와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 통례이다.
- 11) 계획에서 설정된 내용은 『제시(Darstellung)』와 『확정(Festssetzung)』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확정**된 내용은 후에 조례가 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시는 제안사항이거나 아니면 기정사실을 다만 표현해 주는 경우이며 구속력이 없다.
- 12) 베를린, 브레멘과 함부르크는 주시州市로서 주면서 시이고 동시에 하나의 게마인데를 이루기 때문에 환경생태계획의 위계를 모두 따르지 않고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 13) 환경영향이나 자연침해에 대한 보상책은 상쇄, 대체 및 보상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상세한 것은 뒤에 별도로 서술하였다.
- 14) 환경영향을 초래하는 당사자를 말함.
- 15) 16개 주에서 모두 각자의 법령을 만들어 지휘하고 있음.
- 16) 이 항목은 2009년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것으로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상책을 만들어 ‘저장’해두는 것을 말함. 베를린을 비롯한 여러 주에서 십여년 전부터 스스로 개발하여 실시했던 방법이며 이 방법이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되자 법에 차용된 것임. 다만 이 항목이 오해와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음. 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프로젝트 등을 사업의 보상책으로 이용하여 사업가들을 유리하게 한다는 비판도 있음.
- 17) 이 역시 Landscape Planer 들의 작업범위에 속함. 공간계획에는 환경생태실시계획을 도로, 상하수시설, 전기 등의 전문계획에는 경관관리동반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함. 서로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달리하지만 내용은 동일함.
- 18) 번역 생략
- 19) 건설법전 34조는 기존하는 주거지역내에 발생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 4항 3번의 내용은 『각 게마인데는 마을 외곽지역에 동떨어져 있는 외딴 주택들을 마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외딴 주택과 마을이 구조적으로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20) 원문에는 계획확정절차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유형과 각 계획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편의상 요약함.
- 21) 보통 마을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건설사업이 승인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진입로나 기타 공공시설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35조 (1)항, 1~8번까지 외곽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농가, 축사 등을 비롯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원자력시설, 폐기물처리장, 태양에너지발전소 등 도시나 마을의 주거지 근접한 곳에 설치하기 어려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해야 하는 시설들이 이에 속한다.